

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21일
신청인	성명(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)	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)
	주소(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)		
	연락처	전화	휴대전화 전자우편
신청 내용	① 연결 목적		② 점용기간
	점용장소·점용면적 (m ²)		
	공사 실시방법		공사시기 년 월 일 ~ 년 월 일
	도로 복구방법		
	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		
	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		

「도로법」 제52조, 제61조 및 「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」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, 통로,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도로관리청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연결계획서 2. 설계도면(변속차로, 부가차로,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, 점용장소의 면적은 1/1,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) 3.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(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.)	수수료: 1,000원
유의사항	1.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·통로,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(「도로법」 제114조제5호). 2.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, 변상금이 부과됩니다(「도로법」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). 3.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,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도로법」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). 4.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	
작성방법	①란은 휴게소·주유소·공장·아파트·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. ②란은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, 제7호,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,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.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.(예: 국도 ○○호선 등)	

처리절차



